24. 12. 16. 오후 2:24 인쇄

# 실태조사 및 평가

개요	인원배정	편입	복무관리	실태조사 및 평가
군사교육소집				

## 실태조사 및 평가

관할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실태, 자원관리실태등을 실태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음

#### 실태조사 종류

정기실태조사 : 연 1회 모든 해운업체등

수시실태조사: 위반행위 신고 등 특이사항 발생시

#### 실태조사 내용

병역법 제23조의3 및 제40조의6 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의 통보여부

승선근무외의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업체 근무 여부

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및 훈령 제4조제2항후단 선박보유·관리 및 승선여부

명부, 복무기록표 및 근로권익·안전교육이수확인서 등 서류비치 및 기록실태

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, 성희롱·성폭력,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여부 등

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

※ 업체장 지시로 부득이 승선근무기간 미인정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 30일이내 신고하면,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승선근무기간 인정

#### 평가

실태조사 시 기본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

평가 내용: 휴업여부 등 업체실태, 승선근무예비역 복무실태 등

### 평가결과

평가결과 60점이상 업체에 한하여 다음년도 인원배정, 60점미만업체는 제한